

### 미네소타주 신규 임금 착취법 관련 고용인을 위한 안내

미네소타 입법부는 새로운 미네소타주 임금 착취법을 통과시켰으며 주지사는 이에 서명했습니다. 신규 법안은 기존 주정부 노동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임금 및 시간 요건, 보호 및 제재를 허용합니다. 본 안내문은 고용인에게 추가적인 정보와 보호를 제공할 새로운 법 조항을 중점으로 소개합니다.

신규 법안의 모든 조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단, 미네소타 법령 §609.52(형사상의 임금 착취 및 제재)를 개정한 새로운 법 조항은 예외). 형사상 임금 착취 및 제재를 허용한 새 법안 조항은 **2019년 8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새로운 임금 착취법 관련 전체 요약문은 온라인 www.dli.mn.gov/sites/default/files/pdf/wage\_theft\_law\_summary. pdf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새로운 임금 착취법 관련 문의 사항 및 답변은 온라인 <u>www.dli.mn.gov/business/employment-practices/wage-theft-qa</u>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새로운 법안 전문은 온라인 <u>www.revisor.mn.gov/laws/2019/1/Session+Law/Chapter/7/</u>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인을 위한 새로운 보호 정책

고용인의 근무 시작 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추가 정보(미네소타 법령 §181.032 개정안)

고용주는 현재 미네소타 법에 따라 고용인에게 임금, 시간 및 복지 혜택을 포함한 고용 상태와 고용 조건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금 착취법에 따라 모든 고용주는 각 고용인에게 고용 초반에 서면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고용인의 고용 상태 및 고용 조건에 대한 다음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신규).

다음은 고용 시작 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통지서에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특정 정보입니다. 1, 2, 3

<sup>&</sup>lt;sup>1</sup>이주 노동자는 미네소타 법령 **§**§181.85-181.91에 따라 추가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sup>&</sup>lt;sup>2</sup>정육업에 종사하는 고용인 또한 미네소타 법령 §179.86에 따라 추가 통지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sup>&</sup>lt;sup>3</sup>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농장 근로자 또는 임시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 제외)는 또한 미네소타 법령 §181.55-181.57에 명시된 대로 서면 계약 요건을 받아야 합니다.

- 고용인의 고용 상태와 고용인이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및 기타 주정부 노동기준법 및 어떤 기준으로 면제되는지 여부(신규)
- 고용인의 급여 기간 내 근무 일수 및 정기 예정된 급여일(신규)
- 고용인이 첫 급여 지급을 받을 날짜(신규)
- 고용인이 시간, 교대근무, 일, 주, 급여, 작업량, 커미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지 여부 및 추가 요율의 특정 적용 등 고용인의 급여 요율 및 그에 대한 기준(신규)
- 허용된 식대 및 숙박에 대해 청구될 수 있는 수당(있는 경우)(신규)
- 유급 휴가, 병가 또는 기타 유급 휴가(PTO), 유급 휴가 누적 방식 및 사용 조건에 관한 조항(신규)
- 근로자의 임금에서 가능한 공제 목록(신규)
- 고용주의 법적 이름과 경영상의 이름(다른 경우)(신규)
- 고용주 본사 사무소 또는 주요 사업장의 실제 주소 및 우편 주소(다른 경우) (신규)
- 고용주의 전화번호(신규)

고용주는 각 고용인이 서명한 통지서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신규). 모든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영어로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고용인이 통지서를 다른 언어로 제공받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는 진술문이 여러 언어로 포함되어야 합니다(신규). 고용주는 고용인이 요청할 경우 다른 언어로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신규). 고용주는 또한 변경 사항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통지서에 모든 정보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신규).

노동산업부(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y, DLI)는 온라인 www.dli.mn.gov/sites/default/files/doc/employee\_notice\_form.docx에서 이용 가능한 고용인 통지서 견본을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견본 통지서를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소득 명세서를 통해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추가 정보(미네소타법령 §181.032 개정안)

소득 명세서(또는 급여 명세서)는 지급된 임금, 근무 시간, 공제액 및 고용인이 누적한 수당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중요한 급여 기록입니다. 현행 주정부 법안에 따라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또는 각 급여 기간 종료 시 전자 수단으로 소득 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정보가 소득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인은 전자 수단 대신 서면으로 소득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전자 수단으로 근로 소득 명세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의 정규 근무 시간 중에 고용주 소유의 컴퓨터에 고용인이 접속하여 소득 명세서를 검토 및 인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함.) 새 법률에 따르면 각 급여 기간에 고용인에게 제공되는 소득 명세서에는 다음의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고용인 이름
- 급여 기간 동안 고용인의 총 근무 시간
- 고용인이 시간, 교대근무, 일, 주, 급여, 작업량, 커미션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지 여부
  등 고용인의 급여 요율 및 그에 대한 기준(신규)

- 허용된 식대 및 숙박에 대해 청구된 수당(신규)
- 급여 기간 중 고용인이 벌어들인 급여 총액
- 모든 공제가 완료된 후 순 급여액
- 근로자의 임금 중 공제 목록
- 급여 기간 종료 날짜
- 고용주의 법적 및 경영상의 이름
- 고용주의 전화번호 연락처(신규)
- 고용주 본사 사무소 또는 주요 사업장의 실제 주소 및 우편 주소(다른 경우) (신규)

고용인은 소득 명세서 사본을 보관하고 각 급여일마다 이를 검토하여 소득 명세서에 근무 시간과 수령한 급여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인이 매일 근무하는 시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 요율 및 급여 중 모든 공제액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임금 및 커미션 유형과 고용주가 임금 및 커미션을 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시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요건(미네소타 법령 §181.101 개정안)

고용주는 31일마다 최소 1회 고용인이 번 **급여, 소득 및 팁(신규)** 및 정규 급여일에 **고용인이** 3개월마다 최소 1회 이상 번 모든 커미션(신규)을 포함해 모든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금착취법은 추가로 미네소타 법령 §181.101은 고용인의 급여 요율 또는 법에 의한 요율 중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커미션과 임금을 지급하는 실체적인 권리 외에 정기 급여일에 번 임금 및 커미션을 지급받을 권리를 제공함(신규)을 명시합니다.

신규: 고용주는 고용인이 미네소타주의 노동기준법에 따라 권리나 배상을 주장하는 데 대해 보복해서는 안됩니다(미네소타 법령 §181.03 개정안)

고용주는 미네소타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미네소타 적정임금법(Prevailing Wage Act) 및 미네소타 법령 챕터 181, 임금지급법(Payment of Wages Act)의 일부 조항에 따라 DLI에 불만 제기, 고용주에게 고용인의 불만 제기 의도를 말하는 행위 등 고용인이 권리나 배상을 주장하는 데 대해 보복이 금지됩니다. 법에 의해 제공되는 여타의 배상 이외에, 이 세부조항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각위반에 대해 \$700 - \$3,000의 민사상 벌금을 받을 책임이 있습니다.

신규: 행정관은 집행 조치 정보를 공유해야 함(미네소타 법령 §177.27 개정안)

DLI, DLI 행정관, 또는 그 위임 대리인은 고용주에게 발급된 준수 명령서 사본과 명령서 처분 또는 준수 명령서에 명시된 데이터 및 그 처분을 다음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 하나 이상의 주정부 기관 또는 고용주가 행정 적용을 받는 정치 구역 기관의 허가 또는 규제 당국
- 고용주가 공공 계약을 체결하는 공공 계약 기관
- 명령으로 인해 이익에 영향을 받는 고용인

### 경범죄 위반(미네소타 법령 §177.32 개정안)

현행법에 따라 미네소타 공정근로기준법 또는 적정임금법에 따라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을 방해/지연시킨 것으로 밝혀진 한 고용주가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임금착취법은** 미네소타 법령 §§181.01 - 181.723 또는 181.79에 따라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을 방해/지연시키는 모든 고용주 또한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됨을 추가했습니다(신규).

# 신규: "임금 착취" 범죄 및 "임금 착취"를 저지른 데 대한 형사 제재(미네소타 법령 §609.52 개정안)

"임금 착취" 범죄는 고용주가 다음의 사취 목적일 때 발생합니다.

- 고용인의 급여 요율 또는 법에 의한 요율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인에게 모든 임금, 급여, 팁, 소득 또는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고용인에게 실제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임금 영수증을 고용인이 제공하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행위
- 고용주와의 고용 계약에 따라 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리베이트나 환급을 고용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어떤 방식으로든 고용인에게 지급된 임금이 해당 고용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보다 더 많게 만들거나 그렇게 보이게 시도하는 행위

"고용주"는 "모든 개인, 파트너십, 협회, 회사, 비즈니스 신탁 또는 고용인과 관련하여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사람 또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정의됩니다.

"고용인"은 "고용주가 고용한 모든 개인"으로 정의됩니다.

"임금 착취"는 미네소타 법령 §609.52, 세부조항 2(19)의 범죄 절도 정의에 추가되었으며 임금 착취 행위에 대한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착취 액수가 \$35,000 이상인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100,000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 적용
- 임금 착취 액수가 \$5,000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0,000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 적용
- 임금 착취 액수가 \$1,000 이상, \$5,000 이하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0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 적용
- 자산 또는 서비스 착취 액수가 \$50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0 이하의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 적용

착취된 임금 액수 결정 시, 법률에 따라 임금 착취로 도난당한 고용인의 임금을 6개월 이내로 집계할 수 있습니다.

### 법으로 요구되는 기간 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인이 할 수 있는 일

#### DLI에 문의

새 임금착취법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거나 고용주가 미네소타 공정근로기준법, 미네소타 적정임금법의 조항 또는 미네소타 임금지급법의 조항을 위반했거나, 이러한 법규에 따라 귀하의 권리를 주장한 데 대해 보복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산업부의 노동 표준국(Labor Standards)에 651-284-5075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부서에 연락하여 정보를 얻거나 불만을 제기한 개인의 신원은 부서에서 기밀로 유지됩니다.

- 고용주가 고용인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못하거나 시기적절하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행정관은 고용주에게 고용인과 고용주가 합의한 급여 요율 또는 법에 의한 요율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관은 고용주에게 고용인의 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확정손해배상액으로 지불하고/하거나 고용인의 평균 일일 소득과 동일한 요율로 벌금을 지불하거나 벌어들인 커미션의 15분의 1에 해당하지만 행정관의 명령에 대응해 매일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미지급된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소송 제기

- 소액 사건 법원은 분쟁 금액이 \$15,000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변호사 필요 없음).
- 지방 법원은 분쟁 금액이 \$15,000 이상일 때 해당됩입니다.